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제32회 임시이사회 회의록

2018. 9. 17(월)

재단서울장학재단 Seoul Scholarship Foundation

제32회 임시 이사회

ㅁ 일 시 : 2018년 9월 17(월) 07:30

ㅁ 장 소: 달개비

□ 재적이사 : 총 11인

□ 출석이사 : 총 7인

□ 출석감사 : 총 1인

○○○ 사무국장이 제32회 임시이사회의 성원을 보고하다.

○○○ 이사장 직무대행이 인사말에 이어 안건을 간단히 설명하고, ○○○ 사무국장이 미리 배포된회의 자료를 통하여 주요보고안건에 관하여 설명하다.

보고 아건 1. 전차 이사회 회의보고

- 2. 당연직 임원 변경보고
- 3. 재단 운영 보고
- 4. 장학사업 운영 보고
- 5. 예산집행 현황 보고

보고사항이 완료되어 이사장직무대행이 다음 안건에 관하여 심의를 구하다.

제172호 이사 선임에 관한 건

이사장 직무대행은 제172호 이사 선임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ㅇㅇㅇ 사무국장이 이사장의 임기가 지난 3월 10일 만료됨에 따라 서울장학재단 정관 제19조(임원의 임기와 해임) 및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임원)에 의거 금번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임원선임절차는 이사의 사임 및임기만료에 따른 결원 발생 시 서울장학재단 및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공개경쟁모집을 진행하며, 모집 완료 후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선임을 하며, 이사장의 경우 이사중 호선을 통해 선임 후 서울시 및시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등기를 진행하는 절차라고 설명하다. 금번 이사선임과 관련하여 2018.8.31.일서울장학재단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하였으며 8.31부터 9.14일까지 15일간 접수하였다고 말하다. 제출서류는 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경력·학력·자격증 증명서 등이었으며 접수방법은 이메일접수였다고 말하다. 공개모집결과 최종 6명이 접수되었으며, 접수현황에 대해 설명하다.

이사장 직무대행은 6명의 접수된 이사후보님들의 서류를 바탕으로 재단 사업에 대한 경험 및 전문지식

의 전문성과 친화력 및 공감력 등의 리더십, 전략적 사고의 비전 제시 능력, 공익적 가치관 등을 살펴보 시면 좋을 거 같다고 말하며 이사님들에게 의견을 묻다.

○○○ 이사가 다른 출연기관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임원선임이 진행되는데 장학재단은 임원 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묻다.

OOO 사무국장이 서울장학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서울시 및 시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어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다른 출연기관의 경우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도록되어 있어서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저희 기관과는 임원의 선임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다.

OOO 이사가 서울장학재단의 경우 임원 선임에 관해 이사회에 권한이 더 많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하다.

○○○ 이사가 전문성, 리더십, 비전, 가치관 등 4가지 고려사항이 골고루 갖춰있다고 생각되는 분을 선임하면 된다고 생각되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6번 분이 여러 가지로 잘 갖춰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하다.

○○○ 이사가 1번 접수자는 법학과 인권분야에 탁월한 경력이 있지만 장학사업에 관한 비전이나 가치관은 미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2번 접수자는 행정학과 교수님이신데 장학재단에서의 경험이부족하다 생각이 들고, 3번 접수자는 서울시와의 관계는 좋을 것 같으나 서울장학재단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서울시의회와의 원활한 관계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아쉬울 것 같다고 말하고, 4번 접수자는 교육자로서 교육측면에서는 탁월하시나 서울시의회와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부분에서는 부족할 것 같다고 말하고, 5번 접수자는 경험도 많고 훌륭하시며 정년 퇴임 후 사회봉사를 하고자 지원하셨으나 장학사업에 대해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6번 접수자는 지원자 중에서 전문성, 리더십, 비전, 가치관의 부분에서 골고루 갖춰져 있는 것 같고 서울시의회 의원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와의 관계도 좋을 것 같고, 현재 (사)○○이에서 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셔서 장학사업 및 공익적 가치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말하다.

이사장 직무대행이 다른 이사님들께 의견을 묻다.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가 더 이상 의견이 없다고 말하다.

이사장 직무대행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말하다. 투표결과 7명의 참석이사 중 7표를 득표하신 6번 ㅇㅇㅇ(ㅇㅇ.ㅇㅇ) 접수자가 이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하다.

제173호 이사장 선출에 관한 건

이사장 직무대행은 제173호 이사장 선출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 사무국장이 서울장학재단 정관 제19조(임원의 임기와 해임) 및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6조(이사회) 3항에 의거 오늘 새로 선임된 이사님을 포함하여 11명의 재적이사 중에서 호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이사장 직무대행이 이사들에게 의견을 묻다.

○○○ 이사님이 금번에 선임된 ○○○ 이사님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서울시의회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 및 장학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공익적 가치관을 가지고 계셔서 재단의 이사장을 수행하기 위한 적임자라고 생각되어 지므로 ○○○상 이사가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다.

ㅇㅇㅇ 이사가 이사장의 경우 급여가 지급되는지 묻다.

○○○ 사무국장이 이사장은 비상근이며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약간의 직무수당이 주어진다고 말하다. 또한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므로 수행되어지는 업무가 많다고 설명하다.

이사장 직무대행이 서울장학재단 이사장의 경우 비상근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에 참석하여 업무보고 및 의원 질의를 받아야 하는 등의 특수상황을 수행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다.

ㅇㅇㅇ 이사가 상근으로의 전환에 대해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다.

이사장 직무대행이 전국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조사결과 대부분의 장학재단이 이사장은 시도지사가 수행하며, 1명의 상임이사를 두고 있는 곳이 몇 개 기관이 있고, 대부분 비상임 이사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사장 선출에 관한 건과 관련하여 이사님들에게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다. 이에 이사 전원이 ㅇㅇㅇ 신임이사의 이사장 선임에 동의하다.

이사장 직무대행은 제173호 이사장 선출에 관한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ㅇㅇㅇ(ㅇㅇ.ㅇㅇ.ㅇㅇ) 신임 이사가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사장은 시장 및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게 되며, 임기는 교육청 승인일로부터 ㅇ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부연설명하다.

제174호 2018년 사업계획 및 실행예산 변경에 관한 건

이사장 직무대행은 제174호 2018년 사업계획 및 실행예산 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 사무국장이 ㈜○○○의 기부중단에 따라 청춘Dream장학금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8년 실행예산도 당초 13,234,100천원에서 6천만원을 감액하여 13,174,100천원으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이사장 직무대행이 올해만 사업이 중단되는 것인지, 사업이 없어지는 건지 묻다. ○○○ 사무국장이 ㈜○○○의 사업방향이 전국단위의 학생지원으로 변경되어 서울지역 학생을 지원하는 저희 재단과는 방향성에 차이가 있어 더 이상 사업진행은 어렵다고 말하다.

이사장 직무대행이 2018년 사업계획 및 실행예산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4호 2018년 사업계획 및 실행예산 변경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175호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에 관한 건

이사장 직무대행은 제175호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 사무국장이 『부정청 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18.1.17)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 정사항('18.3.2.)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면 개정사항('18.7.24)을 반영하여 서울장학재단 임직 원행동강령을 전면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이사장 직무대행이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에 관한 건에 대해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상위 근거법에 따른 개정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5호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상으로써 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